

충청북도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3
----------	-----

제출년월일 : 1993. 1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매포공해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보상협의지연으로 동조례 시행기간인 '93. 12. 31까지, 보상금 지급에 따른 1년 이내의 부동산 대체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과세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대상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 부득이 동조례의 시행기간을 1년간 연장 시행하여 이주대상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동조례 부칙 3항의 시행기간을 '94. 12. 31까지로 개정
- 현행) '93. 12. 31 → 개정) '94. 12. 31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 기타 참고자료 (별첨)

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단양군매포공해지역이주대상자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항중 "1993년 12월 31일"을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근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③(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